HO BAN 호반건설

고양 향동지구 B-2블록 호반베르디움 주택공급 안내

VERTIUM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은 2016.05.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7.07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2항 제3호 가목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고양청등 이주대책에에 의한 '1순위 미달' 또는 '부적격' 발생 시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및 계약이 진행됩니다.
- 청약 순위제한 기간 : 없음
- 청약통장 사용기준 : 청약통장 순위별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분
- 청약 2순위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치기준금액 미만인 분
- 청약 예치기준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6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1,000만원
- 청약통장 가입일 및 납입인정금액 확인 : 청약접수 시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및 납입인정금액 확인서 제출
- 청약통장 가입일 및 납입횟수 검증제도 폐지 : 2015.11.1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 및 청약부금·청약예금 청약통장 가입자

■ 주택공급 및 입주자모집 관련 문의처 : 견본주택 ☎ 1644-0035, 호반건설 ☎ 1644-0035, 홈페이지 www.hoban.com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청 주택과 – 19814호(2016.07.0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 B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9~21층 7개동 총 461세대 중 아파트 4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고양향동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공급하고 지하4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임 (2016.07.01 아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전공급신청 접수, 2016.07.02 아주대학교 : 호수 추천하여 당첨된 5세대를 제외한 456세대를 일반분양함)

(단위 : ㎡, 세대)

구분	이때프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	이주대책대상자	일반분양					
										기관추천(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일반 공급	
미분양	2016000820-01	70.9637A	70.9637	25.7234	96.6871	50.7182	147.4053	50.2155	168	2	17	17	17	5	110	11	2019년 7월
	2016000820-02	70.8787B	70.8787	25.3992	96.2779	50.6574	146.8953	50.1554	57	0	5	5	5	1	41	2	
	2016000820-03	84.9313	84.9313	30.2753	115.2066	60.7009	175.9075	60.0393	236	3	23	23	23	7	157	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원)

주택형	구분	공급세대수	층구분	분양가격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계약시	2016.11.09	2017.05.09	2017.09.08	2018.01.09	2018.05.09	2018.09.08	2018.11.09	입주지정일
70.9637A	70A	168	1층	151,625,000	192,875,000	344,500,000	34,6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69,100,000
			2층	151,625,000	204,375,000	356,000,000	35,7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71,800,000
			3층	151,625,000	215,875,000	367,500,000	36,9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73,700,000
			4층	151,625,000	223,475,000	375,100,000	37,6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75,700,000
			7층	151,625,000	231,175,000	382,800,000	38,4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77,000,000
70.8787B	70B	57	1층	151,444,000	187,056,000	338,500,000	34,0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67,900,000
			2층	151,444,000	198,356,000	349,800,000	35,1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70,400,000
			3층	151,444,000	209,656,000	361,100,000	36,2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72,900,000
			4층	151,444,000	217,156,000	368,600,000	37,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74,000,000
			7층	151,444,000	224,756,000	376,200,000	37,8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75,900,000
84.9313	84	236	1층	181,469,000	213,631,000	395,100,000	39,7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79,600,000
			2층	181,469,000	226,831,000	408,300,000	40,7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81,800,000
			3층	181,469,000	240,031,000	421,500,000	42,3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84,500,000
			4층	181,469,000	248,831,000	430,300,000	43,2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86,800,000
			7층	181,469,000	257,531,000	439,000,000	44,1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88,300,000

※ 공동사업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분양평면계약별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약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을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등의 고유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별로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하지 않음.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이며 기간 및 주택규모별 상세 사항은 별첨 '전매제한 기간(지역) 및 주택규모 상세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전 공사현장 방문 및 견본주택 관람 등을 통하여 주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전 공사현장 방문 및 견본주택 관람 등을 통하여 주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동·층별 배정방식 등은 향후 사업승인 조건 및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동·층별 배정방식 등은 향후 사업승인 조건 및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약자 및 계약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기하여 산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차이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청약자 및 계약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기하여 산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차이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소수점 이하 절사로 인한 면적 차이는 최종 준공면적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양대금에 반영하며 이로 인한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수점 이하 절사로 인한 면적 차이는 최종 준공면적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양대금에 반영하며 이로 인한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동·층별 배정방식 등은 향후 사업승인 조건 및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동·층별 배정방식 등은 향후 사업승인 조건 및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약자 및 계약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기하여 산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차이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소수점 이하 절사로 인한 면적 차이는 최종 준공면적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양대금에 반영하며 이로 인한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수점 이하 절사로 인한 면적 차이는 최종 준공면적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양대금에 반영하며 이로 인한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구분	공급세대수	층구분	분양가격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계약시	2016.11.09	2017.05.09	2017.09.08	2018.01.09	2018.05.09	2018.09.08	2018.11.09	입주지정일
84.9313	84	236	1층	181,469,000	213,631,000	395,100,000	39,7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79,600,000
			2층	181,469,000	226,831,000	408,300,000	40,7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81,800,000
			3층	181,469,000	240,031,000	421,500,000	42,3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84,500,000
			4층	181,469,000	248,831,000	430,300,000	43,2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86,800,000
			7층	181,469,000	257,531,000	439,000,000	44,1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88,300,000

※ 공동사업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분양평면계약별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약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을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등의 고유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별로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하지 않음.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이며 기간 및 주택규모별 상세 사항은 별첨 '전매제한 기간(지역) 및 주택규모 상세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전 공사현장 방문 및 견본주택 관람 등을 통하여 주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동·층별 배정방식 등은 향후 사업승인 조건 및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동·층별 배정방식 등은 향후 사업승인 조건 및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약자 및 계약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기하여 산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차이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소수점 이하 절사로 인한 면적 차이는 최종 준공면적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양대금에 반영하며 이로 인한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수점 이하 절사로 인한 면적 차이는 최종 준공면적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양대금에 반영하며 이로 인한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개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및 재당첨기]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차순위자를 2순위 자로 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0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혼인으로 인하여 구성하는 세대에 속한 자 제외)를 둔 세대주
  - 부양가족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직계존속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함. 다만, 직계비속 중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혼인한 경우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직계존속 부양기간 산정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직계존속을 최초로 부양하기 시작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부양한 것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부양하기 시작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간을 부양한 것으로 봄.
  - 직계존속 부양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직계존속을 최초로 부양하기 시작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부양한 것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이